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법률 제17325호, '20.5.26. 공포, '20.11.27. 시행)됨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지역영향평가 시기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 17101호, '20.3.24)에 따른 용어 정비와 현행 경마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사회법에서 경마의 승마투표방법을 8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특별승마식을 나머지 7종의 승마결정방법과 달리하는 승마투표방법으로 그 적용을 명확히 하고, 특별승마식의 종류를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4조제1항 제8호 개정)

또한,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방식을 추첨제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성 등 논란으로 '66년 이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특별승마식의 환급금 배분 관련 조문 삭제(안 제7조 삭제)

나.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 도입(마사회법 제44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장외발매소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최대 7년 주기로 주거·교육

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영향 평가를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토록 하고, 기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안 제11조의2 신설)

다.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마의 유사·비위행위 등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안 제12조제1항 개정), 불법경마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불법경마를 홍보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5억원으로 정함(마사회법 제49조의2)

라. 어려운 법률용어인 ‘기승(騎乘)’을 국민이 알기 쉬운 표현인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순화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 제17101호, '20.3.24)에 따라, ‘기승(騎乘)’을 ‘타고 있는’, ‘출주(出走)’를 ‘출전’으로 개정코자 함(안 제4조·제5조·제9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관련 검토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별첨

2)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3) 법안담당

직 위	성 명	사무실 전화	E-mail
축산정책국장	이주명	044-201-2301	leejm66@korea.kr
축산정책과장	박정훈	044-201-2311	hapak246@korea.kr
서기관	최승묵	044-201-2324	csmuk@korea.kr
주무관	홍승탁	044-201-2325	winstaks@korea.kr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승(騎乘)한”을 “타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출주마(出走馬)”를 “출전마”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승마를 결정하는 방법과 달리하는 승마투표방법을 말하며, 특별승마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마의 결정 방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출주하는”을 각각 “출전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연승식·복연승식 및 특별승마식: 출주하는”을 “연승식·복연승식: 출전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승마식에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의 제목 “(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을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주마”를 “출전마”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호 중 “단승식·연승식 및 특별승마식: 출주”를 “단승식 및 연승식: 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주”를 “출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①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는 전체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장외발매소별로 최대 7년 주기로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거나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법 제51조제8호”를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법 제51조제8호 및 제9호, 제53조제1호”로 하고, “최대 1억원”을 “최대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7천만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승식: 출주하는 말이 두 마리 이상일 것
2. 복승식 및 쌍승식: 출주하는 말이 3마리 이상일 것
3. 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출주하는 말이 4마리 이상일 것
4. 연승식 · 복연승식 및 특별승마식: 출주하는 말이 5마리 이상일 것

<신 설>

제5조(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주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승마투표방법을 말하며, 특별 승마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마의 결정 방법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

-----.

1. ---- 출전하는 -----

2. ----- 출전하는

3. ----- 출전하는 -----
4. 연승식 및 복연승식: 출전하는 -----

5. 특별승마식에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
---- 출전마 -----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 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의 배분은 발매된 마권 중 일부의 마권을 출주마별로 추첨으로 선정하고 그 선정된 마권에 대하여 영 별표 1 제4호의 도착순위별 환급률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결승선에 도착한 말이 4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도착하지 못한 말에 대하여 선정된 마권에 배분할 환급금을 결승선에 도착한 각 말에 대하여 선정된 마권에 똑같이 나눈다.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삭 제>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

-----.

1. 단승식·연승식 및 특별승마식: 출주하지 아니한 해당 말
2. 복승식·쌍승식·복연승식·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마권에 표시된 조의 말 중 한 마리 이상의 말이 출주하지 아니한 말이 속하는 조의 모든 말

<신 설>

<신 설>

1. 단승식 및 연승식: 출전-----
2. -----

----- 출전 -----

3. 특별승마식의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 ① 법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는 전체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매년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장외발매소별로 최대 7년 주기로 시행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시행할 때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거나 운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외발매소에 대해 우선적으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4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법 제51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1억원
2. 법 제50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5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최대 7천만원. 다만, 조교사·기수 또는 말관리사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최대 1억원으로 한다.

② (생략)

실시하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

--.

1.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법 제51조제8호 및 제9호, 제53조제1호에 ---
----- 5억원
2. -----

----- 3
억원. -----

----- 5억원-
-----.

② (현행과 같음)